



: 2018-09-27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재나59(본소) 물품대금
2017재나6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재심피고), 항소인

B

재심대상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2나8876(본소), 2012나
8883(반소) 판결

제 1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0가단96533(본소), 2011
가단42182(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7.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1.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2,110,3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584,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재심 전 당심에서 제1 예비적으로 디자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2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추가하였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재심청구취지는 재심소장의 기재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항소의 기각을 구하는 내용이 라 할 것이나, 원고가 손해액을 별도로 특정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본소 청구취지와 달리 청구하므로, 재심소장의 재심청구취지 그대로 기재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0. 12. 2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0가단96533호 사건),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별지 디자인 목록 기재와 같이 디자인 등록(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을 받은 'F' 및 'G'(이하 이들을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의 형태와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1. 6. 1. 반소로 이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1가단42182호 사건).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2012. 7. 12.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 주장의 이 사건 부품의 형태가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 형태라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이 법원 2012나8876(본소), 2012나8883(반소) 사건]. 피고는 제1심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재심 전 당심에서 제1 예비적으로 디자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2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재심 전 항소심은 2014. 6. 26.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은 이 사건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생산한 뒤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 중 피고가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본소청구 중 원고 승소부분을 피고가 입은 손해액에 상응하여 일부 취소하고,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대법원 2014다53196(본소), 2014다53202(반소) 사건]. 대법원은 2014. 10. 3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4. 11. 5.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일부 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 확정

갑 제36 내지 38, 40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8. 7.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1944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별지 1 기재 디자인권 목록 가. 등록디자인은 출원일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제1호¹) 또는 제2호²)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고, 또한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위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특허심판원은 2015. 7. 23. 위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특허법원 2015허5487호 사건), 특허법원은 2017. 1. 20. 위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후417호 사건) 대법원은 2017. 5. 31.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여 위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8. 7.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1943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별지 1 기재 디자인권 목록 나. 등록디자인은 출원일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또한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위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5. 7. 23. 위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특허법원 2015허5470호 사건), 특허법원은 2017. 1. 20. 위 등록디자인은 위 등록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이나 다른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어 위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후400호 사건) 대법원은 2017. 5. 31.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여 위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8. 7.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1942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별지 1 기재 디자인권 목록 다. 등록디자인은 출원일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또한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5. 7. 23. 위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특허법원 2015허5463호 사건), 특허법원은 2016. 11. 11. 위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다른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후2980호 사건) 대법원은 2017. 3. 3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여 위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3380호로 원고가 생산하는 'I'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별지 1 기재 디자인권 목록 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7. 10. 11. 원고가 생산하는 위 부품의 디자인이 위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지 않아 위 심결이 확정되었다.

3.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물품성 결여 등으로 무효이므로 무효인 디자인등록에 기한 피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은 이 사건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생산한 뒤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 중 피고가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본소청구 중 원고 승소부분을 피고가 입은 손해액에 상응하여 일부 취소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별지 1 기재 디자인권 목록 나. 다.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라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별지 1 기재 디자인권 목록 가. 등록디자인과 관련하여, 관련 사건(특허심판원 2014당3380호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이 원고가 생산한 제품의 디자인이 위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그 심결이 확정되었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에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에 의하면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



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530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별지 1 기재 디자인권 목록 나. 다.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각 심결이 내려졌고, 피고가 그 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각 확정됨으로써 위 각 심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 있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별지 1 기재 디자인권 목록 나. 다.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이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무효로 되는 변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별지 1 기재 디자인권 목록 가.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특허법원에서 취소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관련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이 원고가 생산한 제품의 디자인이 위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 심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변경이 재심대상판결의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쳐 그러한 사실인정이 아니었다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내지 일응의 개연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의 반소청구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은 이 사건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생산한 뒤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 중 피고가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 제1항),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디자인권자는 그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별지 1 기재 디자인권 목록 나. 다.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이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무효로 되는 변경이 있기는 하나, 디자인 보호법은 등록을 전제로 해서 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아무런 심사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디자인을 보호하고 일정한 행위유형을 금지하여 그 보호대상과 보호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는바(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과 디자인 보호법이 저촉, 충돌하는 경우 디자인 보호법이 우선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재심 전 당심에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별지 1 기재 디자인권 목록 나. 다. 등록디자인의 유, 무효와 관련 없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은 이 사건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생산한 뒤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 중 피고가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재심대상 사건에서 이 사건 부품의 형태가 당해 상품이 그 기능과 효용을 가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취하지 않을 수 없는 형태로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1 자목 (2)항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원고의 피고 제품 모방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위와 같은 주장이 배척되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별지 1 기재 디자인권 목록 나. 다.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라는 특허심판원 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품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임이 증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법원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별지 1 기재 디자인권 목록 나. 등록디자인은 위 등록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이나 다른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별지 1 기재 디자인권 목록 다. 등록디자인은 위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다른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디자인 등록이 무효라는 것으로, 위와 같은 특허법원의 판단에서 논리 필연적으로 이 사건 부품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결국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등록무효 판결이 재심대상판결 당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된다는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와 달리 민사소송법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그 주장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별지 1 기재 디자인권 목록 나. 다. 등록디자인의 무효로 인해 원고의 피고 제품 모방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결국 위와 같은 등록디자인의 무효가 재심대상판결의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아

 판사 윤원묵

 판사 강문희 해외연수로 서명날인 불가

 재판장
 판 사



(별지 1)

디자인권 목록

가.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권리자
창작자
디자인대상물품:
권리존속기간: ~

나.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권리자
창작자:
디자인대상물품: “”
권리존속기간: ~

다. 출원번호:
출원일:



: 2018-09-27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권리자:

창작자:

디자인대상물품: "

권리존속기간: ~ -끝-



: 2018-09-27

(별지 2)

부품설명 및 도면

가. 별지 1. 가.항 부품

(1) 명칭:

(2) 부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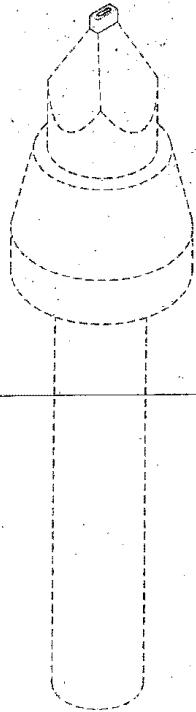
(가)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임.

(나) 반도체 칩 또는 발광다이오드 소자를 패키징하는 장비인 다이본더에 사용 되는 부품으로서 반도체 칩 또는 발광다이오드 소자의 표면을 진공 흡착하여 이동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



: 2018-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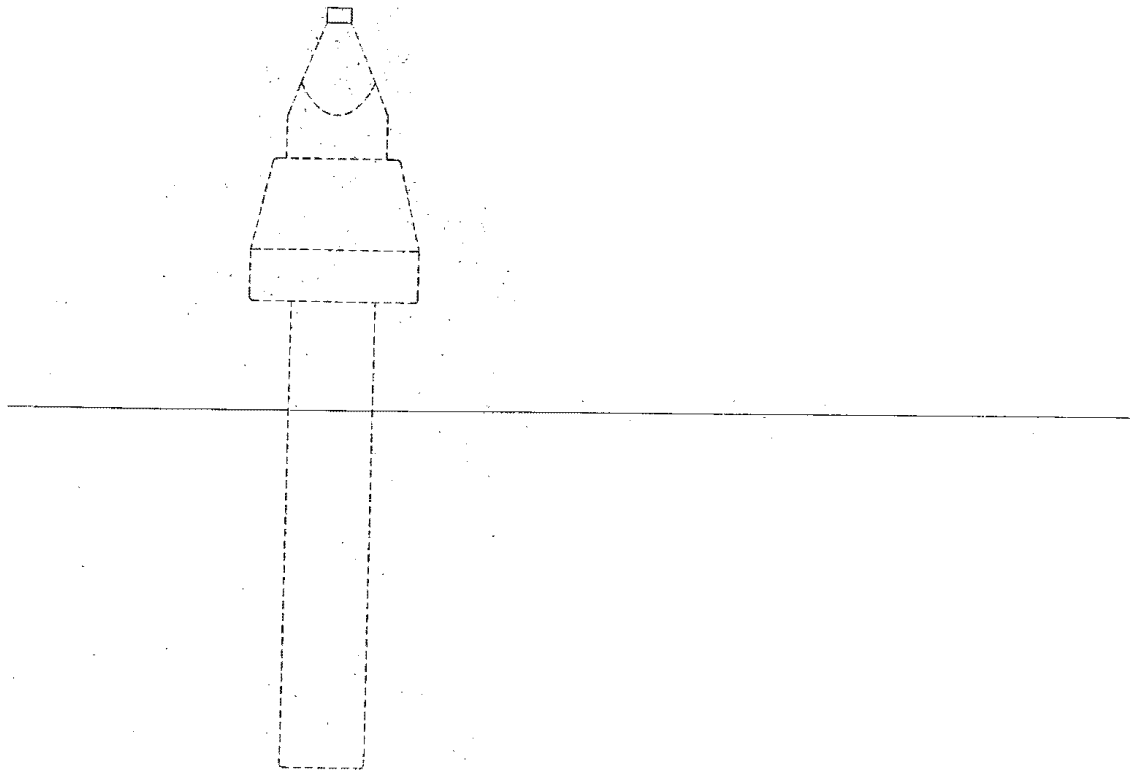
(3) [사시도]
도면





: 2018-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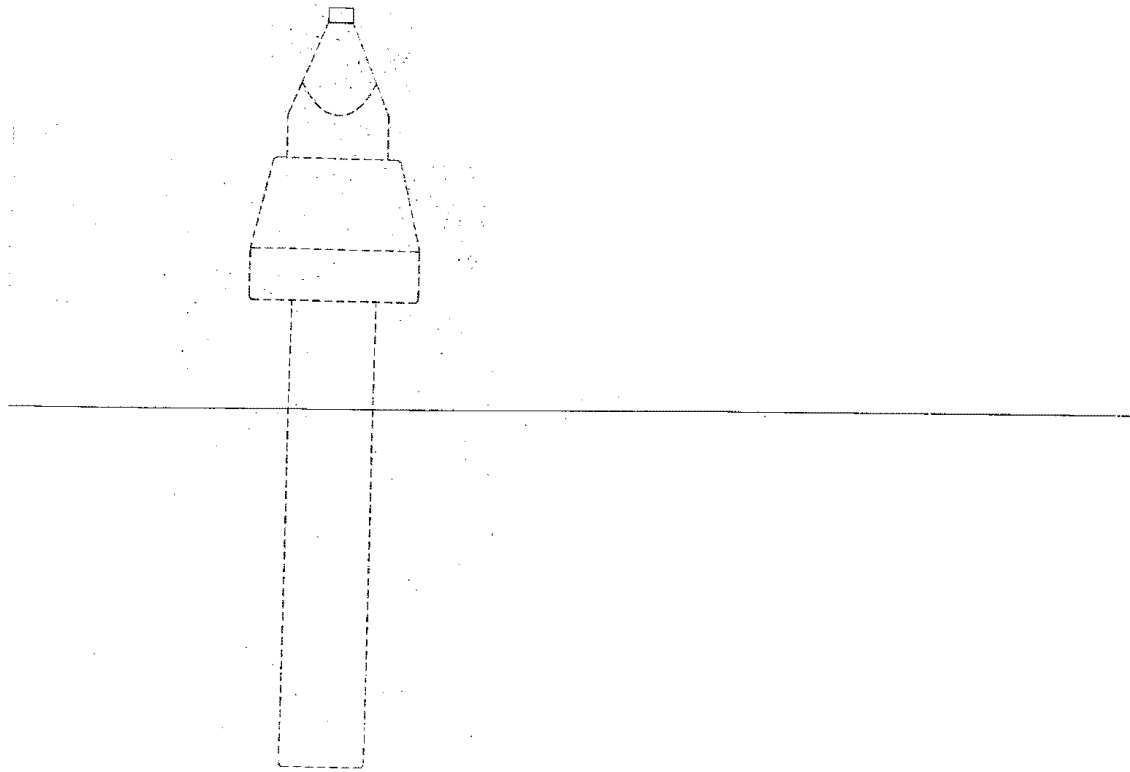
【정면도】





: 2018-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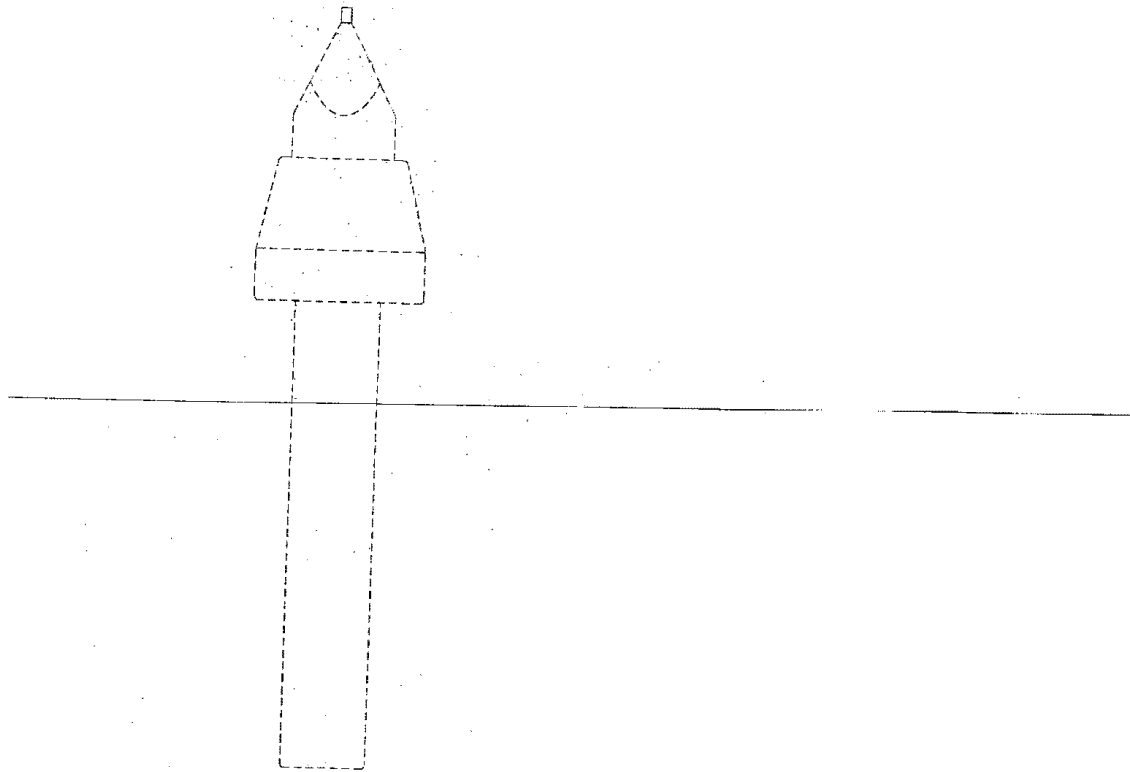
【배면도】





: 2018-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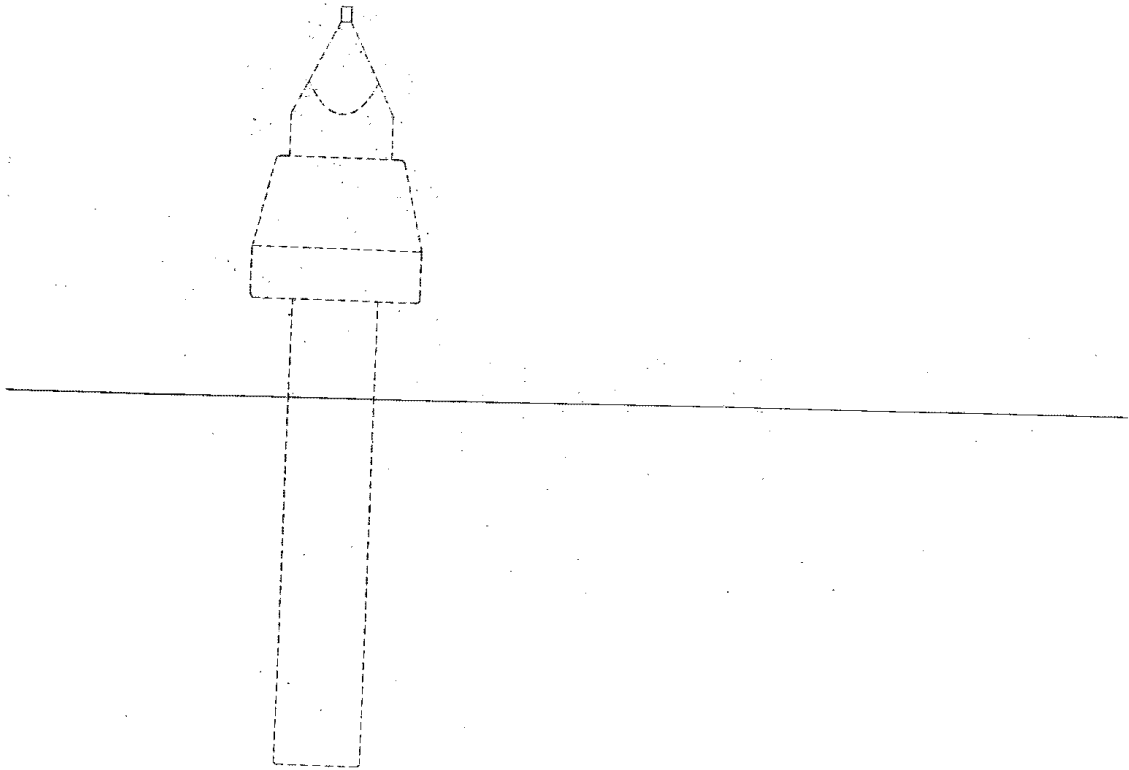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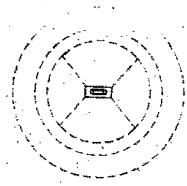


: 2018-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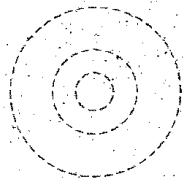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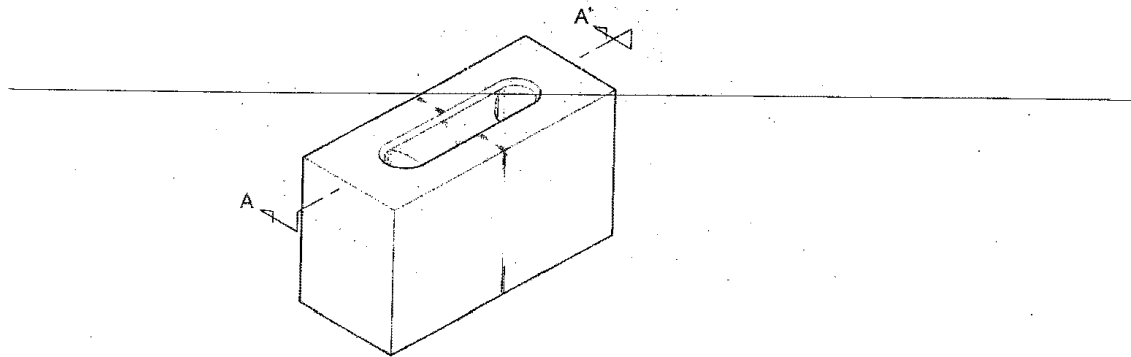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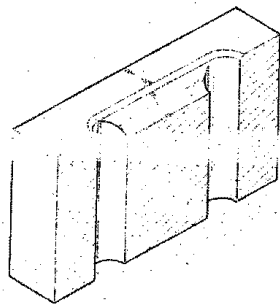
【저면도】



【참고도 1】



【참고도 2】





: 2018-09-27

나. 별지 1. 나.항 부품

(1)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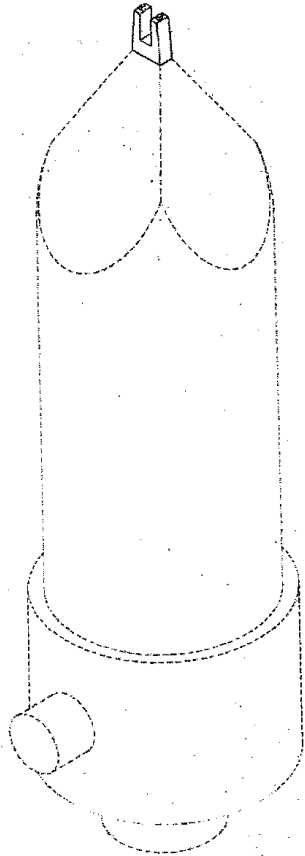
(2) 부품설명

(가) 재질은 금속 또는 합성수지임

(나) 반도체 칩 또는 발광다이오드 소자를 패키징하는 장비인 다이본더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반도체 칩 또는 발광다이오드 소자를 리드 프레임에 접착하기 위한 애폭시 접착제를 도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

(3) 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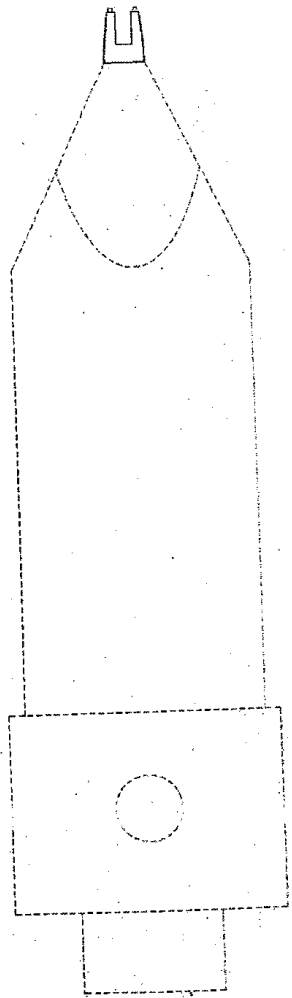
【사시도】





: 2018-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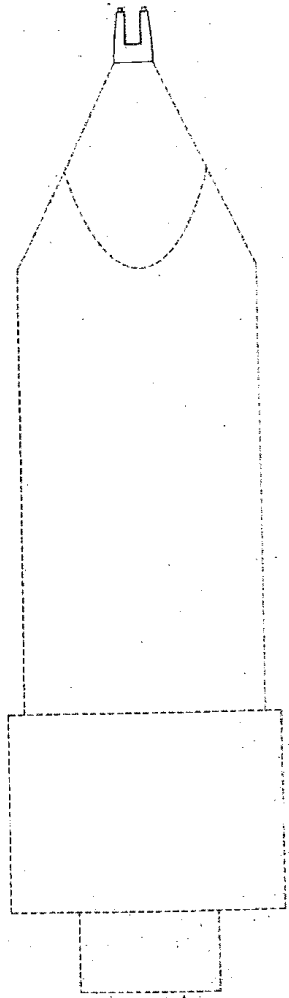
【정면도】





: 2018-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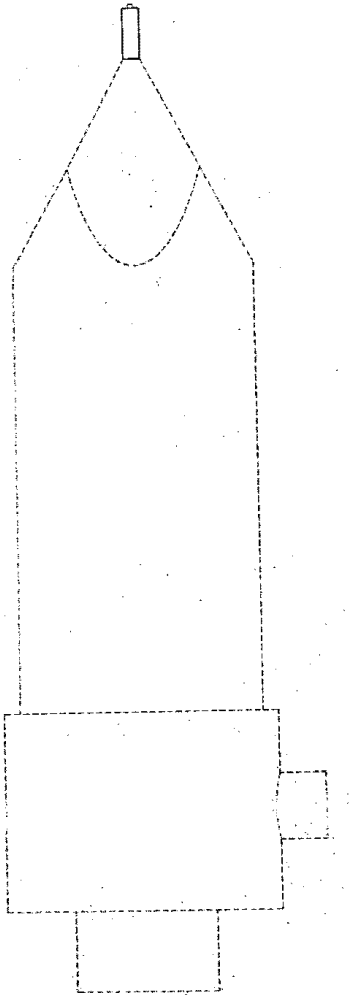
【배면도】





: 2018-09-27

【복합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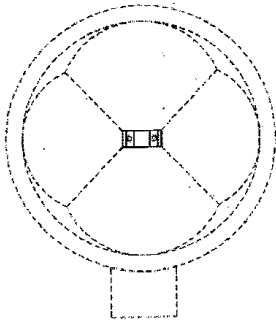


: 2018-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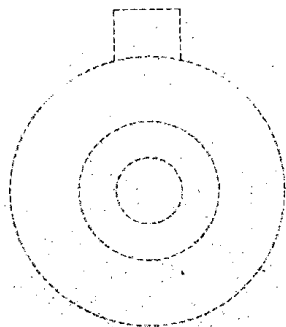
【우측면도】

좌측면도와 대칭임

【평면도】



【저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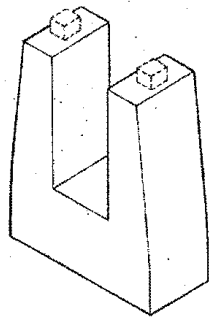




: 2018-09-27

【참고도 1】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의 확대 사시도





: 2018-09-27

다. 별지 1. 다.항 부품

(1) 명칭:

(2) 부품설명

(가) 재질은 금속 또는 합성수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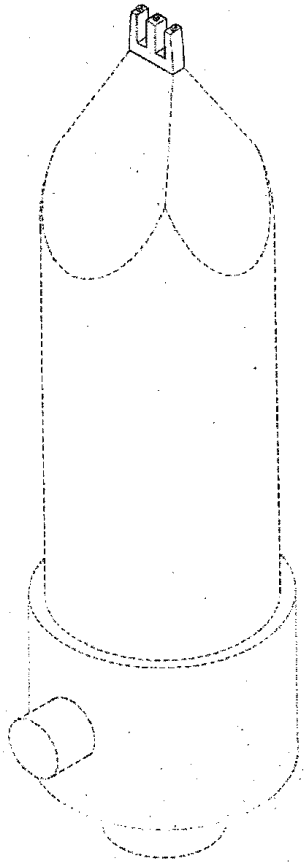
(나) 반도체 칩 또는 발광다이오드 소자를 패키징하는 장비인 다이본더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반도체 칩 또는 발광다이오드 소자를 리드 프레임에 접착하기 위한 에폭시 접착제를 도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



: 2018-09-27

3)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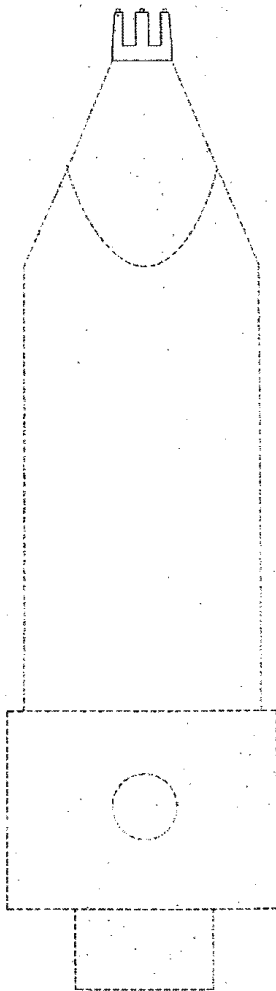
【사지도】





: 2018-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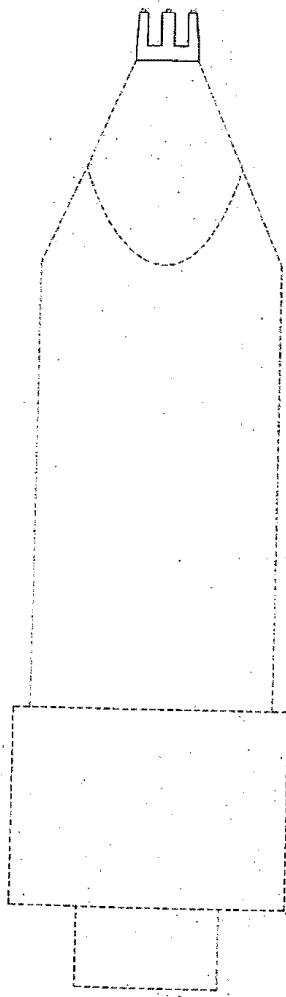
【정면도】





: 2018-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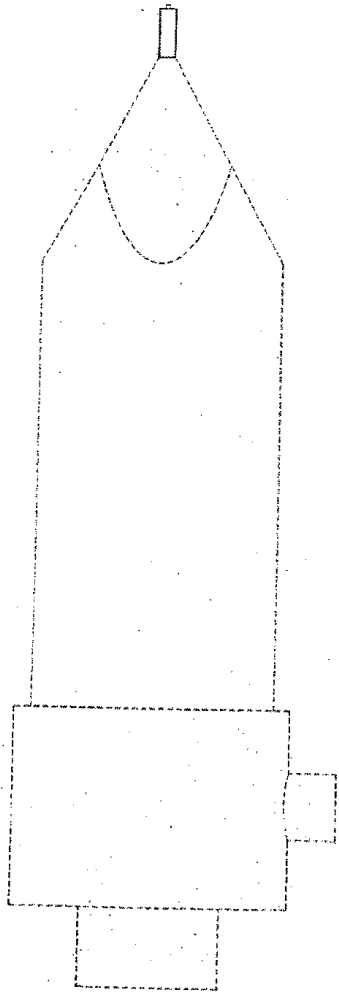
【배면도】





: 2018-09-27

【부속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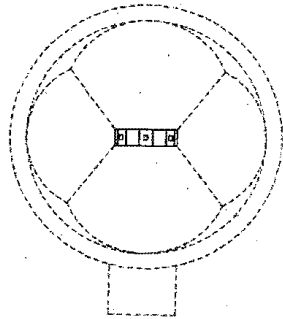


: 2018-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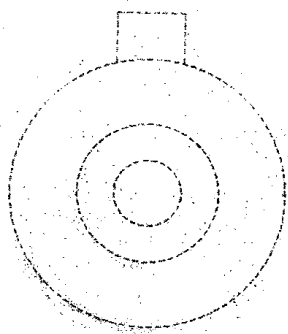
【우측면도】

좌측면도와 대칭임

【평면도】



【저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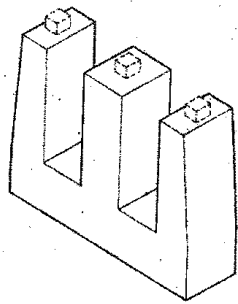




: 2018-09-27

【참고도 1】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참고 확대사시도



- 끝 -